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법원행정처

알 림

1.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은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형사공탁 운영반 등을 통하여 나온 내용들과 관련 질의 사항을 선별 정리하여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의 이해를 돕고, 해당 업무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2. 본 책자의 내용은 법령 및 예규 등의 제·개정 사항과 관련 판례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약어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동일인 증명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서·····동일인 신청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발급사실 통지서

- 목 차 -

제도 안내 ····· 1

Q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 1
Q 형사공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
Q 형사공탁이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3
Q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 4

적용대상 ····· 5

Q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 5
Q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5
Q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있나요? ····· 6
Q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어떻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 7
Q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7
Q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9

공탁신청 절차 ····· 10

Q 형사공탁 신청 절차와 그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0
Q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11
Q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12
Q 서울중앙지방법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한가요? ····· 12
Q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13
Q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있나요? ····· 14
Q 공탁서에 어떤 법령조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 15
Q 공탁서상 피공탁자 성명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15
Q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 16
Q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나요? · 17

Q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17
Q 법원·검찰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가 불허가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원인사실 기재 방법은? ····· 18
Q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 공탁원인 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19
Q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나요? ····· 20
Q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0
Q 공탁자가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편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 21
Q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어떤 것인가요? ····· 22
Q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도 포함되나요? ····· 22
Q 형사공탁 회수제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23

형사공탁 공고 및 사실 통지 ····· 24

Q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공탁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24
Q 공탁관은 어떤 방식으로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하게 되나요? ····· 24
Q 수 개의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이 다를 때 모든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나요? ····· 25
Q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문건으로 접수하나요? ····· 25
Q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고지하는 절차는? ····· 26
Q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해야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야 하는지? ····· 27
Q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탁된 사실을 고지하나요? ····· 28
Q 형사공탁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 28
Q 형사공탁 공고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9
Q 전자공탁 홈페이지 외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형사공탁 공고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9

형사공탁 특례 공탁물 지급절차 ····· 30

Q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나요? ····· 30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 31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확인 절차는? ····· 32
Q 검찰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2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서 접수담당자는(법원)? ····· 33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는(법원)? ····· 33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서 접수담당자의 신청인 자격 등 동일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 34
Q 해당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35
Q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형사공탁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각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신청을 어느 기관에 하여야 하나요? ····· 35
Q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종결된 경우 피해자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나요? ····· 36
Q 상속증명서면은 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만 제출하면 되나요? ····· 37
Q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고 상속인 각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각 상속인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37
Q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출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공탁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 38
Q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 인적 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8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절차는? ····· 39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의 절차는? ····· 40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의 접수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40
Q 공탁관은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41
Q 공탁관은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삼단바코드(위변조방지바코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41
Q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42
Q 형사공탁 피공탁자 본인이나 본인 외의 승계인 등의 지급청구 시 입력은 어떻게 할까요? ····· 43

공탁서 정정 및 열람·사실증명 관련 ····· 43

Q 형사공탁 특례 공탁신청 후 정정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공탁서 정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43
Q 공고사항에 오류(오기)가 있는 경우 정정이 가능한가요? ····· 44
Q 형사공탁 공탁기록의 열람·복사제공 방식과 비실명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44
Q 형사공탁 특례 공탁기록의 사실증명 신청 시 제공방식과 비실명처리 방법은? ····· 45
Q 제1지역 군사법원 제2부(재판부)에 계속 중인 군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관할 공탁소인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할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어디인가요? ····· 45
Q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해주나요? ····· 47
Q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는 어디서 송부해주나요? ····· 48

견본 기록 ····· 49

목차로 이동

제도 안내

Q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Q 형사공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합니다)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이동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 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라는 취지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동일인 증명서와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탁법 제5조의2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상세 내용
토지관할(제1항)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공탁자(제1항)	형사 피고인으로 한정
공탁원인(제1항)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 기재(제2항)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
공탁원인사실 기재(제2항)	피해발생시점,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
공탁통지 방식(제3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
공탁물 수령 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서면(제4항)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함

목차로 이동

Q 형사공탁이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으로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변제공탁과의 차이점 개괄]

구 분	형사변제공탁	형사공탁
피공탁자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성·가명), 형사사건번호
공탁통지 방법	피공탁자 주소지에 배달증명	인터넷 공고
형사공탁사실 통지	-	공탁관 ⇨ 법원 및 검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	법원 또는 검찰 ⇨ 피공탁자

목차로 이동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	-	법원 또는 검찰 ⇨ 공탁관
출급청구 시 첨부서류	공탁통지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Q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이의유보하고 출급함 ☑”).

○ 위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Q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Q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공탁은 공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소멸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행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지정의무를 부담합니다(대판 1997. 10. 16. 96다11747 등 참조).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경우도 공탁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

목차로 이동

○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고,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피해발생사실 등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 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인데, “성명불상자”의 경우 형사공탁 특례의 도입 취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Q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 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라는 점에서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공탁규칙 20조 2항),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15

조).

○ 따라서 주식회사가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공탁의 요건인 “법령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 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식회사에 대한 합의금 등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절차에 의할 수 있습니다.

Q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어떻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상속증명서면’ 이라 함) 등을 첨부해서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상속인은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받은 동일인 증명서와 상속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목차로 이동

○ 강도살인죄 등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해자 사망시점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의 “피해자”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의 열람을 신청 하였지만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어 피해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을 기재하되, 괄호로 “사망” 사실을 기재합니다. 형사공탁절차상 불가피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령, 공소장 등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홍00”으로 기재된 경우 피공탁자 성명란에 “홍00(사망)”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사망한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공탁원인을 기재합니다.

○ 상속인은 해당 법원이나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와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이동

Q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형사공탁의 경우 대상범죄를 소송절차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공탁법 제5조의2에서 그 대상채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고려할 때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해당범죄의 부수적 보호법익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과 현재 실무상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 - “양형기준” 참조).

목차로 이동

공탁신청 절차

Q 형사공탁 신청 절차와 그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형사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소를 방문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합니다.

○ 첨부서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관은 형사공탁 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적 식을 갖춘 신청인지 여부 등을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 공탁관의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인 경우 공탁신청을 수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주고, 공탁자는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하게 되고 (가상계좌에 의한 납입 가능) 공탁자가 공탁금을 보관은행에 납입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형사공탁 사실을 전자공탁홈페이지 및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원과 검찰청에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목차로 이동

[공탁 신청절차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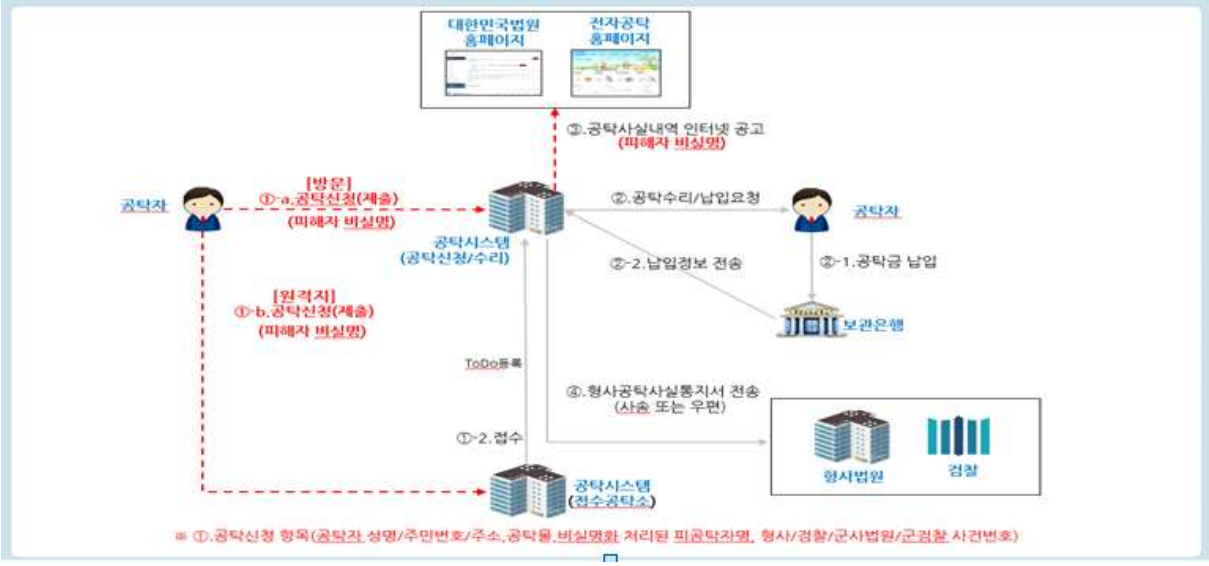

Q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출력한 서면”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이동

Q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법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 제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점과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당하는지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소명서면이 첨부된 경우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대한 형사공탁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격지 신청]

Q 서울중앙지방법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한가요?

목차로 이동

○ 금전변제공탁신청이나 금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167호).

○ 사례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접수공탁소가 부산지방법원 공탁소가 됩니다. 그런데 관할공탁소와 접수공탁소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 소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관할 외 공탁소에 공탁신청,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원격지 공탁소를 이용한 공탁신청의 경우 기록이 소재하는 성격상 열람이나 사실증명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개괄]

형사공탁 특례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원격지 신청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
공탁신청	○	×	○
지급신청	○	×	○
공탁서 정정신청	○	×	×
열람・사실증명 신청	○	×	×

[전자공탁]

Q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목차로 이동

○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등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신청이나 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시스템 개발 정도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공탁 신청이나 출급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기재]

Q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있나요?

○ 실체법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 할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의 반대급부의 내용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 받을 목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을 한 경우 형사공탁 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목차로 이동

[공탁서 기재]

Q 공탁서에 어떤 법령조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 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하여 공탁관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하면 됩니다. 형사공탁서 법령조항란에 “공탁법 제5조의2”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탁자가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소에서도 전산시스템 입력 시 공탁근거 법령조항란은 공탁법 제5조의2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탁서 기재]

Q 공탁서상 피공탁자 성명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피공탁자의 성명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기호 등)이나 가명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합니다.

○ 따라서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면 되고, 일부가 비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재례: 홍길동, 홍길○, 홍□동, 성춘향(가명)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법 제5조의2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1.홍길동 2.홍길○ 3.홍□동 4.성춘향(가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공소장을, 진술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진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기재하지 않는데(공탁규칙 제82조),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Q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목차로 이동

Q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나요?

○ 공소장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산입력 시 피해자 성명은 비실명처리가 되어 열람이나 사실증명은 피공탁자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됩니다.

○ 형사공탁공고 시에도 피공탁자 성명은 전산입력 된 형태로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됩니다.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는 피공탁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 피공탁자 성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서 기재]

Q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 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의미하는데, 주로 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등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 참조).

○ 특히 형사공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서 기재]

Q 법원·검찰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가 불허가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원인사실 기재 방법은?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된 사정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또한 공탁관이 공탁신청서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면으로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차로 이동

[공탁서 기재]

Q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을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 공탁원인 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table>
<tr><td colspan="2">공 탁 번 호</td><td>년 금 제 호</td><td colspan="2">년 월 일 신청</td><td>법령조항</td><td></td></tr>
<tr><td rowspan="4">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 rowspan="4"></td><td rowspan="4">피공탁자</td><td>성 명</td><td colspan="2">1.홍길동
2.홍길○
3.홍□동
4.성춘향(가명)</td></tr>
<tr><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td><td colspan="2">.....
.....</td></tr>
<tr><td>주 소
(본점, 주사무소)</td><td>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 탁 금 액</td><td>한글</td><td colspan="2" rowspan="2">보 관 은 행</td><td colspan="2" rowspan="2">은행 지점</td></tr>
<tr><td>숫자</td></tr>
<tr><td colspan="2">공탁원인사실</td><td colspan="5">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시 ○○구 ○○로 ○길 ○, ○○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td></tr>
</table>

○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등이 준용되어 피해자(피공탁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는 사정만을 소명하면 되고,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와 같이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기재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법령 명칭만 기재해도 됩니다.

[공탁 신청]

Q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나요?

○ 형사공탁의 대상 범죄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여 불허가 된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불허하는 재판장 등의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Q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의 형사사건 공소장에 대상 범죄의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로 기재된 경우 동법 제24조가 적용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소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면]

Q 공탁자가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편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참조).

○ 하지만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면]

Q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어떤 것인가요?

○ 형사공탁 특례 사유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 등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0)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한편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범위가 제한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발급받은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 서식 참조).

Q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도 포함되나요?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이 출력 또는 발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확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 여부 확인 등).

[회수제한 신고]

Q 형사공탁 회수제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변제공탁절차에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하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됩니다.

○ 공탁자는 공탁신청 시에 형사공탁서 하단 “회수제한신고” 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형사재판에서 민법 제487조에 기한 형사변제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재형 2000-4 참조).

형사공탁 공고 및 사실 통지

Q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공탁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탁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공탁사실통지]

Q 공탁관은 어떤 방식으로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하게 되나요?

○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공탁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탁사건정보와 공탁당사자 정보가 자동생성 되는데, 이를 출력한 후 그 통지서 원본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법원과 검찰에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합니다.

- 공탁소에서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하게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공탁 사실을 고지 할 수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공탁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Q 수 개의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이 다를 때 모든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나요?

○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탁자가 제출한 “대법원홈페이지 사건조회 출력물” 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통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하여 각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한편 위 공소제기 된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 하는 경우라면 병합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합니다.

Q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문건으로 접수하나요?

○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추후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판기록에 편철됩니다. 따라서 기존 형사문건의 대면 또는 우편접수 시의 업무례에 따라 문건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별도의 문건코드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므로 법원 문건 접수의 방법에 따르면 됩니다. [MG101 문건 입력/수정] 화면에서 제출자구분 법원를 선택한 후 제출자란에 공탁관임을 기재하고 제출자명을 기재합니다(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홍길동' 또는 '공탁관 홍길동'). 문서명에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로 수기 입력하면 됩니다.

Q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고지하는 절차는?

○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건에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고 선임계 등이 제출되어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합니다(공탁규칙 제85조 제2항).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5항), [MG545 동일인 확인 증명서 출력/고지서출력]에서 고지서 양식을 출력하고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의 고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고지합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 후단).

목차로 이동

Q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해야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야 하는지?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이 가리키는 '이 경우'는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 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재판부가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을 받았고 피해자가 고지를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합니다(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고지와는 별개입니다).

○ 이때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고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탁된 사실을 고지하나요?

○ 검찰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3항(대검예규 제1329호) 참조].

[공고]

Q 형사공탁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하게 됩니다.

○ [WKT157 형사공탁공고등록]에서 공고할 사건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각각 게시(공고게시 버튼 활성화)하게 됩니다.

○ 공고사항은 자동생성되고, 미리보기 기능을 통하여 공고될 문서를 사전에 열람 및 확인 가능합니다.

○ 입력할 기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내용 입력이 가능합니다.

[공고]

Q 형사공탁 공고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 앞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먼저 전자공탁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홈페이지의 형사공탁공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사건인 형사사건번호 또는 검찰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공고문(PDF 전자문서)은 출력과 저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 그 이외에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민원에 대하여 공탁 사건을 안내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

Q 전자공탁 홈페이지 외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형사공탁 공고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피해자인 피공탁자는 아래 제시된 유관기관 홈페이지의 형사공탁 안내 배너를 통해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
- 대한법무사협회(https://kjaar.kabl.kr)

▌형사공탁 특례 공탁물 지급절차

Q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나요?

목차로 이동

○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우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사건이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한 후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절차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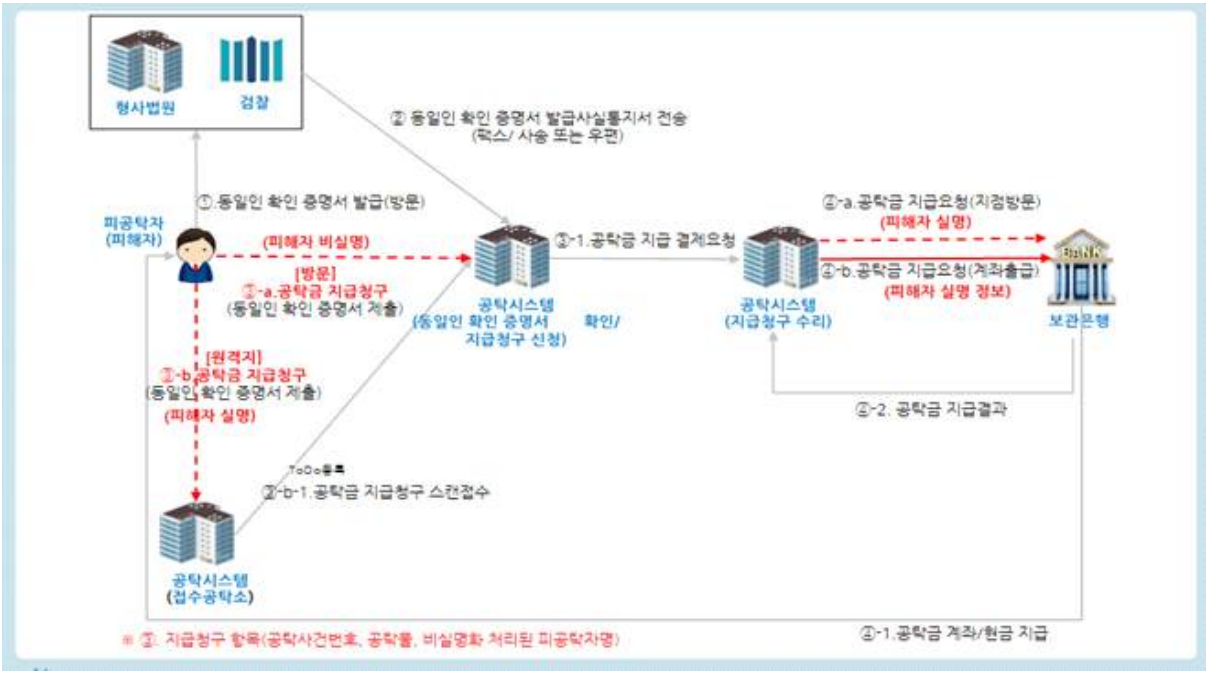

○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는 동일인 증명서로 증명하게 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탁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피공탁자 본인(피공탁자의 포괄승계인 포함)이 출급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적용).

○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입금 방식(또는 현금)으로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법원]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 신설되는 CR545 화면에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 및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MG101 문건 입력/수정]에서 입력된 제증명 발급 신청 내역을 불러온 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신청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찾아가도록 하거나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확인 절차는?

○ 동일인 신청서의 형사본안사건 란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재판기록을 찾아 대조하고,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예시: 김본명, 김○○, 홍길동(가명)]으로 지칭되는 자가 맞는지 공소장 등이나 조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수인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재판기록이 다른 법원이나 검찰

로 넘어간 경우도 재판기록을 통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발급 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일인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자가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는 동일인 신청서에 관련 의견을 메모 등으로 기재한 후 재판장의 허부 결재를 받아 공판기록에 편철합니다.

[증명서-검찰]

Q 검찰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참조

○ 담당 검사가 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 직원이 동일인 증명서 원본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증명서]

목차로 이동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서 접수담당자는(법원)?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역시 제증명의 일종이므로 각급 법원의 제증명 담당자가 접수합니다. 다만 재판기록을 통한 피공탁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전산공증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 발급은 어렵고, 발급담당자(재판부)에 동일인 신청서를 인계하여 접수 이후의 발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는(법원)?

○ 재판기록을 통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므로 형사공탁의 원인 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가 발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동일인 신청서에 허부 도장을 받는 형태로 재판장의 결재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접수의 과정은 여타의 제증명과 마찬가지로 제증명 담당자가 처리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별도의 증명서 발급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전반적으로 피해자 열람・복사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서 접수담당자의 신청인 자격 등 동일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목차로 이동

○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이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릅니다. 공탁금 출급에 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을 제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상속인 등),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 해당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①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와 ② 해당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이를 준용하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목차로 이동

법원 발급	검찰 발급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1]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되기 이전인 경우
증인 소환 등을 통하여 재판기록상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2]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검찰에 인계된 경우

Q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형사공탁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각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신청을 어느 기관에 하여야 하나요?

○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판 중인 때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해당 형사재판부에 신청합니다.

단, 재판부에 증거기록이 제출되기 전이라면 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항소 되어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중인 때에는 “서울고등법원” 해당 형사재판부에 신청 합니다.

단, 해당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증거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심급이나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함

목차로 이동

Q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종결된 경우 피해자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나요?

○ 형사사건이 완결된 경우 담임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6조),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그 기록을 보관하므로(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례의 경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기록 인계 중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록 도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속증명서면은 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만 제출하면 되나요?

○ 상속인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 상속증명서면에 의하여 자신이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공탁소에도 위 상속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증명서면을 증명서 발급기관과 공탁소에 각각 제출합니다.

○ 상속증명서면은 증명서 발급기관이나 공탁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①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② 피공탁자(피해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입니다.

Q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고 상속인 각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각 상속인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상속인 중의 1인이 공탁소에 피상속인 명의의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명서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경우 이미 제출된 동일인 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 다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1항 단서)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의 출급청구]

Q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출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공탁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 확인에 관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 하단 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원본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한 사항을 출급청구서 상단 여백에 기재한 후 지급청구서 등 일체 서류를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합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항 별표 5 양식 참고).

Q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 인적 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재판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검찰이 담당합니다.

○ 담당검사는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 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동일인 증명서의 접수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는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하게 됩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절차는?

○ 인감증명서나 이에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에 준하여 엄격히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의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95호)'에 준하여 심사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의 절차는?

○ 신청인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출급절차를 진행하고자 공탁소

를 방문할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발급사실 통지서는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한 중요한 보조수단이므로 발급사실 통지가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출력과 동시에 발급사실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양 서면을 모두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동일인 증명서를 건네준 직후 공탁소에 팩스로 발급사실 통지서를 송부한 뒤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공탁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편이나 사송의 방법으로 발급사실 통지서 원본을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타의 공탁관계서류 접수절차에 준하여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

Q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의 접수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발급사실 통지서 사본 및 원본의 도착 일시는 기록표지에 표시하여 이력을 관리합니다.

○ 발급사실 통지서 및 동일인 증명서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사실 통지서 팩스 수신 ⇨ 접수인 날인 ⇨ 공탁기록 표지에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 기재하고 공탁기록에 편철 ⇨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되면(출급청구서에 첨부된 경우 포함) 피공탁자의 정보를 WKT145. 형사공탁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 화면에 입력하고 공탁기록에 편철 ⇨ 발급사실 통지서 원본 도착 ⇨ 접수인 날인 ⇨ 기록표지에 원본 도달일시를 기재하고 공탁기록에 편철
- 기록표지 기재례: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피공탁자 홍○○)
  발급기관: OOOO
  0000. 0. 0. 팩스 수신, 00. 0. 0. 원본 도착

목차로 이동

Q 공탁관은 출급청구인이 제출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①문서 하단에 있는 “삼단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확인할 수 있고, ②문서 중앙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와 검찰에서 송부한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에 중앙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법원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검찰과 달리 “삼단바코드”가 없고, 동일인 증명서와 그 발급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Q 공탁관은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삼단바코드(위변조방지바코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의 진위확인 코너를 이용하여 동일인 증명서 하단의 위변조방지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원본 문서의 진위 여부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구글플레이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하단 우측)전체메뉴 ⇨ 음성변환/진위확인 코너 선택 ⇨ 동일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 스캔 ⇨ 원본 문서 확인

Q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된 때 피공탁자에 관한 정보(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증명서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를 전산등록을 합니다.

○ ‘형사공탁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 화면에 입력된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WKT711 공탁사건 상세내역](공탁원장)에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 피공탁자가 출급청구 한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WKT145 피공탁자개인정보관리]에 입력되어야 출급청구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입력 절차: [WKT145 형사공탁피공탁자개인정보관리] 입력 ⇨ [WKT311 금전지급청구] 등록 ⇨ 지급청구 수리

Q 형사공탁 피공탁자 본인이나 본인 외의 승계인 등의 지급청구 시 입력은 어떻게 할까요?

○ 지급청구자가 피공탁자 본인인 경우 [WKT161_1_1 당사자조회]를 통하여 공탁신청 시 등록된 피공탁자를 선택한 후 호출-당사자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당사자조회 팝업을 통해 공탁신청 시 등록된 피공탁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 지급청구자가 피공탁자 본인 이외 가족이나 권리승계인인 경우 [WKT161_R 당사자입력(형사공탁)]를 통하여 지급청구자를 입력-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당사자입력(형사공탁) 팝업을 통해 지급청구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명 항목에서 피공탁자를 선택한 후 다음 빈칸에 지급청구자의 성명과 자격을 입력합니다.

공탁서 정정 및 열람·사실증명 관련

Q 형사공탁 특례 공탁신청 후 정정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공탁서 정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공탁자는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정할 사항이 공탁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 업무담당자는 [WKT173 정정신청]에서 정정할 사항을 입력할 때 피공탁자의

실명이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 공고사항에 오류(오기)가 있는 경우 정정이 가능한가요?

○ [WKT245 정정처리확인]에서 공탁내역 정정처리가 완료된 후 정정공고가 가능합니다.

○ 정정공고는 [WKT158 형사공탁정정공고등록]에서 정정공고내용을 입력한 후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로 가능하며, 최초 공고는 공고번호 1번, 정정공고는 공고번호 2번으로 됩니다.

Q 형사공탁 공탁기록의 열람·복사제공 방식과 비실명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와 같은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기재된 공탁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제공합니다.

- 비실명처리대상정보

①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②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③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④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Q 형사공탁 특례 공탁기록의 사실증명 신청 시 제공방식과 비실명처리 방법은?

○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대한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를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 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합니다.

[군형사사건의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제1심]

Q 제1지역 군사법원 제2부(재판부)에 계속 중인 군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관할 공탁소인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할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어디인가요?

○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해당 군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 및 그에 대응하는 군검찰이 접수하므로 ‘제1지역군사법원 제2부(재판부)’ 및 ‘그에 대응하는 군검찰’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군형사사건의 피고인도 형사공탁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88조)

- 일반사건과 달리 군형사사건은 사건검색 등을 통한 정보 확인이 용이하지 않고, 군사법원 및 군검찰 간에도 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형사공탁 출급 절차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군사법원 소재지 외에 설치된 재판부에 계속 중인 군형사사건에 관한 형사공탁은 재판부 소재지에 가까운 본·지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신청 및 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합니다(별표 2 군사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참고)
- 공소를 제기한 군검찰은 통상 공소장 상단 중앙에 기재됩니다.

○ 군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공탁사실의 통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송부합니다.

[군형사사건의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송부기관]

	(군사)법원	(군)검찰(공소유지)
1심	해당 군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	각 지역 군검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각 군 고등검찰
상고심	대법원	대검찰청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의 개편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고, 민관 이관 범죄(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사건, 군인신분 취득 전 범죄를 말함)는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이 관할하므로 형사공탁사실 통지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Q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해주나요?

○ 군형사사건에 대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기관도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①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 ② 사건종결의 전·후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이를 준용하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다만, 군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피공탁자가 1심 계속 중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군사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기관을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

군사법원 발급	군검찰 발급
증거기록 등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경우[3]	증거기록 등이 군사법원에 제출되기 이전일 경우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재판기록상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4]
-	판결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군검찰에 인계된 경우

Q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는 어디서 송부해주나요?

3) 증거기록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심급이나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군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함

목차로 이동

○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군사법원 형사재판부 또는 군검찰의 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관할공탁소에 발급사실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견본 기록

2022금900500 2022금900500

O O

피 공 탁 자 인 적 사 항
노 출 금 지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탁사건기록

사 건 번 호	2022금900500	공 탁 종 류	형사공탁특례 공탁법제5조의2
공 탁 자	나공탁		
피 공 탁 자	홍○○		
비 고			

공탁금액 : ₩10,000,000(일천만원)

2022. 12. 9. 공탁신청 수리

1.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피공탁자 홍○○)
   발급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9. 팩스 수신, 2023. 1. 10. 원본 도착

종 국 사 유	종 국 일 자	기록보존종기	대공탁번호	부속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금 제 호

[별지 제1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table>
<tr><td colspan="2">공 탁 번 호</td><td>2022년금제900500호</td><td colspan="2">2022년12월9일 신청</td><td>법령조항</td><td>공탁법5조의2</td></tr>
<tr><td rowspan="4">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나공탁</td><td rowspan="4">피공탁자</td><td>성 명</td><td colspan="2">홍○○</td></tr>
<tr><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123456-78910111</td><td rowspan="2">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td><td colspan="2">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
상해</td></tr>
<tr><td>주 소
(본점, 주사무소)</td><td>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999</td><td rowspan="2">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td><td colspan="2">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6789</td></tr>
<tr><td>전화번호</td><td>02-123-4567</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 탁 금 액</td><td>한글 일천만원</td><td colspan="2" rowspan="2">보 관 은 행</td><td colspan="2" rowspan="2">○○은행 법원출장소 지점</td></tr>
<tr><td>숫자 10,000,000원</td></tr>
<tr><td colspan="2">공탁원인사실</td><td colspan="5">공탁자는 2022. 8. 29. 23:3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4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중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홍○○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홍○○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td></tr>
<tr><td colspan="2">비고(첨부서류등)</td><td colspan="5">1. 공판계속증명원 2. 공소장 부본 3.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
☐ 계좌납입신청</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나공탁 인(서명) 성명 인(서명)</td></tr>
<tr><td>회수제한 신고</td><td colspan="6">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나공탁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td></tr>
<tr><td colspan="7">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2022년 12월 10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일공탁 (인)</td></tr>
<tr><td colspan="7">(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td></tr>
</table>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성명란 :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을, “홍○동” 이 기재된 경우 “홍○동”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 ①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공판 계속 증명원

사　　건　　2022고단12345호 상해
피 고 인　　나공탁

위 사건의 공판이 귀원에 계속 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지 500원 첨 부

2022. 12. 9.

신청인 : 나공탁

위 증명합니다.
2022.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일참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9. 20.

사건번호 2022년 형제6789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검 사 나 검 사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나공탁(123456-78910111)

직 업 회사원

주 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999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도봉동 1234번지

죄 명 상해, 폭행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없음

Ⅱ. 공소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9. 23:3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4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중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홍○○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홍○○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table>
<tr><td colspan="4">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td><td>허</td><td>부</td></tr>
<tr><td colspan="4"></td><td>(인)</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성 명</td><td>나공탁</td><td>전화 번호</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담당사무원</td><td colspan="2"></td></tr>
<tr><td>자 격</td><td>피고인</td><td>소명자료</td><td colspan="2"></td></tr>
<tr><td>신 청 구 분</td><td colspan="5">☐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td></tr>
<tr><td>사 용 용 도</td><td colspan="5">합의 또는 공탁</td></tr>
<tr><td rowspan="2">대 상 기 록</td><td>사건 번호</td><td colspan="2">사 건 명</td><td colspan="2">재 판 부</td></tr>
<tr><td>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호</td><td colspan="2">상해</td><td colspan="2">제1형사단독</td></tr>
<tr><td>복사/출력·
복제할 부분</td><td colspan="5">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또는 공탁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td></tr>
<tr><td>복사/출력
방법</td><td colspan="5">☑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필사 ☐ 신청인 복사설비 ☐</td></tr>
<tr><td colspan="6">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2 년 12 월 9 일
신청인 나공탁 (서명 또는 날인)</td></tr>
<tr><td>비 고
(재판장
지정사항 등)</td><td colspan="5"></td></tr>
<tr><td>영 수 일 시</td><td colspan="2">2022 . 12 . 9. 14 : 00</td><td>영 수 인</td><td colspan="2"></td></tr>
<tr><td>신청 수수료</td><td colspan="3">☐ 500 원 ☐ 면 제</td><td colspan="2" rowspan="2">(수 입 인 지 첩 부 란)</td></tr>
<tr><td>복사/출력·
복제 비용</td><td colspan="3">원</td></tr>
</table>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62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4.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 · 변호인(사무원 포함) ·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5. 법원복사기/프린터로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6.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은 별도)

7. 복사/출력·복제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출력·복제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출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8.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양식]

대한민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금제900500
2. 공탁신청 연월일 2022. 12. 9.
3. 공탁물 금전
4. 형사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호
5. 검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6789호
6. 피공탁자 홍○○
7. 공탁물 수령 · 회수와 관련된 사항

가.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나.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22.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일공탁

[연락처 : 123-4567(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

[별지 제4호 양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금제900500호	
	공탁신청연월일	2022. 12. 9.	
	공탁물	금 일천만 원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호 상해
		검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6789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나공탁
	피공탁자		홍○○
첨부서면의 명칭			공소장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2022.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일공탁 (직인)

[연락처 : 123-4567(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

1. 위 통지서는 공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로서 통지서 기재 공탁금액과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피공탁자가 공탁금액 확인을 원하는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도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양식]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형사본안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 상해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금제900500 형사공탁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	
		상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홍○○	
피공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87654-1234567	

공탁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202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일참여 (인)

※문의사항연락처 : OO법원 형사 O단독 법원사무관 O O O
직통전화 : (○○○) ○○○ - ○○○○
팩 스 : (○○○) ○○○ - ○○○○ e-mail : @scourt.go.kr

[별지 제11호 양식]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형사본안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 상해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금제900500 형사공탁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	
		상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홍○○	
피공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87654-1234567	

공탁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202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일참여 (인)

※문의사항연락처 : OO법원 형사 O단독 법원사무관 O O O
직통전화 : (○○○) ○○○ - ○○○○
팩 스 : (○○○) ○○○ - ○○○○ e-mail : @scourt.go.kr

[별지 제6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공 탁 번 호</td><td colspan="2">2022년금제900500호</td><td colspan="2">공 탁 금 액</td><td>한글 일천만원
숫자 10,000,000원</td></tr>
<tr><td rowspan="2">공탁자</td><td>성 명
(상호, 명칭)</td><td colspan="2">나공탁</td><td rowspan="2">피공탁자</td><td>성 명</td><td>홍○○</td></tr>
<tr><td>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123456-78910111</td><td>성 명</td><td>홍○○</td></tr>
<tr><td rowspan="3">청구내역</td><td>청구금액</td><td>이자의 청구기간</td><td>이자 금액</td><td colspan="2">합계금액</td><td>비 고</td></tr>
<tr><td>한글 일천만원</td><td rowspan="2"></td><td>(은행)</td><td colspan="2">(은행)</td><td></td></tr>
<tr><td>숫자 10,000,000원</td><td colspan="4">※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td></tr>
<tr><td colspan="2">보 관 은 행</td><td colspan="5">은행 법원 지점</td></tr>
<tr><td colspan="2">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td><td colspan="2">출급청구시</td><td colspan="3">회수청구시</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td><td colspan="3">☐ 피공탁자 동의에 의하여 회수
☐ 무죄판결 확정에 의하여 회수
☐ 착오공탁</td></tr>
<tr><td colspan="2">비고
(첨부서류 등)</td><td colspan="5">☑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 채권양도 원인서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동의서 ☐ 무죄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 ☐ 착오 증명서면
☐ 기타( )</td></tr>
<tr><td colspan="2">계좌입금</td><td colspan="5">☐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3년 1월 9일</td></tr>
<tr><td colspan="3">청구인</td><td colspan="4">대리인</td></tr>
<tr><td colspan="3">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000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987654-1234567
성명 : 홍길동 인(서명)
(전화번호 : 010-1234-5678)</td><td colspan="4">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td></tr>
<tr><td colspan="7">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2023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일공탁 (인)</td></tr>
<tr><td colspan="7">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td></tr>
</table>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계좌입금' 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7.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의 취지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양식] 재판양식 B497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table>
<tr><td rowspan="2">형사본안사건</td><td colspan="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 형사제1단독</td></tr>
<tr><td colspan="4">상해</td></tr>
<tr><td rowspan="4">공탁사건
정보</td><td>공탁번호</td><td>서울중앙지방법원</td><td colspan="2">2022금제900500 형사공탁</td></tr>
<tr><td>공탁물</td><td colspan="3">금전</td></tr>
<tr><td rowspan="2">공탁서 기재
형사사건</td><td colspan="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호</td></tr>
<tr><td colspan="3">상해</td></tr>
<tr><td>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td><td colspan="3">홍○○</td></tr>
<tr><td rowspan="2">피공탁자</td><td>성명</td><td colspan="3">홍길동</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987654-1234567</td></tr>
</table>

공탁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동일인을 확인합니다.

202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일참여 (인)

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 본 증명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